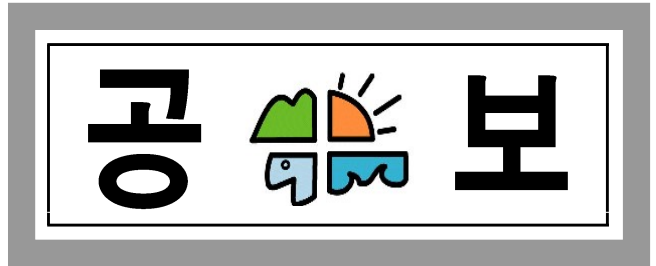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210호 2019년 5월 29일(수)

공 고

-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사항 공고 2

공 고

「속초시 공인 조례」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29일

속 초 시 장

1.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사유

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(lobas) e-세출시스템 공인등록

2. 공인명 및 인영 : 등록 2개

구분	공 인 명	인영	규격	최초사용일	비고
등록	속초시상수도 특별회계지출원인 (수도행정담당)		1.8×1.8cm	2019. 5. 29.	
등록	속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(수도행정담당)		1.8×1.8cm	2019. 5. 29.	